

본당 사목평의회 정식 명칭 정리

이 문서는 한국 천주교회 본당 사목평의회에서 통용되는 일반 표준 명칭 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각 교구 고유 규정과 용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식 채택 전 반드시 교구청 사무처/사목국 또는 본당 규정집의 원문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성직자·당연직 명칭

구분	정식 명칭	역할·설명	비고 (용어 변형·확인 필요)
당연직	의장	주임신부가 맡는 당연직 의장. 사목평의회를 주재하며 최종 결정권을 가짐(교회법 제536조).	교구에 따라 ‘당연직 회장’으로 표기하기도 함
당연직	부의장	보좌신부가 맡음. 주임신부를 보좌하고 부재 시 대리.	보좌신부 미배치 본당은 해당 없음
당연직	지도신부	분과·단체별 담당 사제를 두는 경우의 명칭.	운영 방식에 따라 선택적

2. 평신도 임원 (선출·임명직) 명칭

구분	정식 명칭	역할·설명	비고 (용어 변형·확인 필요)
평신도 임원	사목회장	평신도 대표. 평신도 측을 총괄하고 상임위원회를 이끌며 주임신부를 보좌.	‘총회장’, ‘수석 부회장’ 등으로도 표기
평신도 임원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담당 분야를 총괄.	흔히 기능별로 세분 → 여성부 회장·재정부회장 등
평신도 임원	총무	회의 운영·행정·문서·일정 등 실무 전반을 총괄.	서기 업무를 겸하기도 함
평신도 임원	서기	회의록 작성 및 기록 관리.	총무가 겸직하는 본당 많음
평신도 임원	재무 (재정부장)	본당 재정 관리 및 회계.	‘재정부회장’으로 상위 임원화하기도 함
평신도 임원	감사	재정 및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	1~2인

3. 위원회·분과 명칭

구분	정식 명칭	역할·설명	비고 (용어 변형·확인 필요)
위원회	상임위원회	임원과 주요 분과장으로 구성되는 상시 실무 협의체.	명칭·구성 교구별 상이
분과	분과위원회 (분과)	기능별 실무 조직 단위.	규모에 따라 부(部)로 부르기도 함
분과	분과위원장 (분과장)	각 분과를 대표하고 해당 사업을 총괄.	
분과 예시	전례·선교(복음화)·교육·사회사목·청소년·홍보·총무·관리(시설)·재정 분과 등	본당의 사목 기능별로 두는 대표적 분과들.	본당 규모·교구 지침에 따라 명칭·개수 상이

4. 반·구역·단체 관련 명칭

구분	정식 명칭	역할·설명	비고 (용어 변형·확인 필요)
공동체	구역장	구역(여러 반의 묶음) 단위의 사목·연락 대표.	
공동체	반장	최소 공동체인 ‘반’의 운영 대표.	
단체	당연직 위원 (단체 대표)	레지오 마리아 등 주요 신심·사도직 단체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	위원 자격 부여 여부는 규정 확인 필요
자문	고문	전임 회장 등에게 자문 역할을 맡김.	두는 본당만 해당

5. 현재 앱 표기 ↔ 표준 명칭 대응

현재 앱 표기(예시 이미지)	대응 표준 명칭	확인 사항
의장 (주임신부)	의장 (당연직) — 주임신부	적절·유지
사목회장	사목회장 (평신도 대표)	적절
여성부회장	부회장(여성)	규정상 명칭이 ‘여성부회장’인지 확인
재정부회장	부회장(재정) 또는 재무	‘재정부장/재무’와의 명칭 통일 확인
총무	총무	적절

6. 용어 변형·대조 시 확인 포인트

- 명칭 자체 — ‘사목평의회’와 ‘사목협의회’가 혼용됩니다. 각 교구 규정의 정식 표기를 확인하세요.
- 최상위 직함 — 주임신부를 ‘의장’으로 쓰는지 ‘당연직 회장’으로 쓰는지 확인. (교회법상 주재자라는 지위)

는 동일)

- 평신도 대표 — ‘사목회장/총회장/수석부회장’ 중 어느 명칭을 정식으로 쓰는지 확인.
- 부회장 구분 — 기능별(여성·재정 등) 부회장을 정식 직함으로 두는지, 명칭이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 분과 구성 — 분과의 이름·개수는 본당·교구별로 다릅니다. 규정에 열거된 분과명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 임기·자격 — 이 문서는 명칭만 정리한 것으로 임기·선출 방식·정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거·출처

- 가톨릭 교회법전 제536조 (본당 사목평의회의 설치와 주임신부의 주재)
- 「‘본당 사목 평의회’란?」, 가톨릭신문 (구조·자문기구 성격 참고)

※ 위 근거는 일반 구조에 대한 것이며, 각 교구 고유 규정 원문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